예산총칙

제1조: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	회	계	豈		세입.세출 예산 총 액	일시차입 한 도 액
		계			314,297,504	9,428,925
1.	일	반	회	계	300,115,428	9,003,463
2.	특	별	회	계	14,182,076	425,462
	의 료	보호	호 기	금	902,502	27,075
	주민소득	지원 및 4	생활안정	기 금	608,059	18,242
	주	차		장	10,847,363	325,421
	주 거 환	· 경 개	선 사	업	172,640	5,179
	발 전 소	주 변 지 의	부지 원 시	나 업	665,241	19,957
	기 반	시 실	별 사	업	89,818	2,695
	지 하	수	관	리	285,766	8,573
	재 정	刊	축	진	610,687	18,321

제2조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800,000천원이다.

제6조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93,97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
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